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15호
- 나. 제 안 자 : 권수정 의원 외 10명
- 다. 제안일자 : 2020년 2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지역개발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조성 방법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 으로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을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함(안 제3조).
 - 출 연 금: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 나. 한글 어문 규정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중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한 수입항목으로 정비해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조성 현황

- 지역개발기금(이하 “지역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지역기금”은 종전까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지역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었으나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음.
- 그동안 “지역기금”은 두 차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2007년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에 1,500억 원, 2008년 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에 1,442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모두 회수된 상태임.
 - 7년 만기상환인 지역개발채권은 2013년과 2015년에 각 채권상환

계좌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5억 9백만 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음.

<지역특별회계 채권발행 및 용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6	'07	'08	'09~'12	'13	'14	'15
채권발행내역	1,489	-	1,502	-	-	-	-
이자지출	-	-	-	-	270	-	272
상환내역	-	-	-	-	1,489	-	1,502
용자내역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용자회수	-	-	-	-	1,500 (도기본)	-	1,442 (SH공사)

- 2020년도 말 지역기금의 조성액은 60억 6천 1백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7천 5백만 원은 별도의 사업 없이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임.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항목	지출액
합 계	1,175,155	합 계	1,175,155
예치금회수	1,042,528	기본경비	14,000
이자수입	132,627	예치금	1,161,155

라. 기금의 조성 재원 용어정비(안 제3조)

-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된 서울시의 ‘출연금’ 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전출금’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기금수립기준” 은 기금의 수입과목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9개로 명시하고 있음[참고자료].
- ‘출연금’ 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의 대행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이전지출을 의미함.
- 따라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수입 과목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 이러한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종전의 “출연금” 을 “전입금” 으로 변경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의 ‘기금전출금’ 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인 ‘전입금’ 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전출금’ 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며, ‘전출금’ 을 지원받는 기금 입장에서는 이를 수입 항목 중 ‘전입금’ 으로 계상¹⁾해야 함.

- 한편, 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들 또한 “기금수립 기준” 의 수입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u>출연금</u>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 -----의 <u>기금전출금</u> ----- ----- 2. <u>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u> 3. <u>기금의 운용수익금</u> 4. <u>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u>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u>지원금</u>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u>로부터의 전입금</u>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u>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u> 3. <u>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u> 4. <u>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u>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u>수입</u>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 은 샘	02-2180-8064

1)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2019.3), 68면

[참고자료]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u>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u> , <u>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u>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 출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17면